#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4 발의연월일: 2020. 12. 7.

발 의 자:최기상・박영순・박용진

이탄희 · 김경만 · 이광재

최인호 · 정일영 · 신현영

강훈식 • 윤건영 의원

(119]

### 제안이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 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

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2조의 의2제2항 신설).
- 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5조의2제2항 신설).
- 다.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6조의17 신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증인이 거동불편·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는 제16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 <u>(수명법관)</u> (생 략)	제72조의2 <u>(고지의 방법)</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
	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
	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생 략)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법원은 증인이 거동불편·교
	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
	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
	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
	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
	<u>다.</u>
<u> &lt;신 설&gt;</u>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
	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 <신 설>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는 제16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